##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(양경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599 발의연월일: 2020. 7. 31.

발 의 자:양경숙・이상직・김승원

이탄희 • 위성곤 • 신정훈

임호선 · 김영호 · 용혜인

박영순 · 오영훈 의원

(11일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가지는 주택을 "토지임대부 분양주택"이라 정의하고 있음.

이러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과거 2009년 「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근거하여 추진되었다가 2015년에 해 당 법률이 폐지되면서 현행법에 정의 규정 등이 신설된 것임.

최근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토지 소유권은 건설사업시행자 인 공공이 가지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분양해 다소 저렴한 가격으 로 공급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음.

이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30년으로 하고 토지임 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도록 하 는 등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64조 및 제78조의2 신설).

##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 년 이내"를 "하나에서 정하는 기간"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 분 후단 중 "주택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간 중 가 장 긴 기간을 적용하되, 주택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"지위"를 "지위: 10년 이내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"지위."를 "지위(다 만,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 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설·공급되는 주택 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제외한다): 10년 이내"로 하며, 같은 호 단 서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"지위."를 "지위[다만, 「수도권 정비계획법 \_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(이하 이 조에서 "수도권"이라 한다)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에 따라 지정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·공 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제외한다]: 10년 이내"로 하며,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4 호 본문 중 "지위."를 "지위(다만, 제57조제2항 각 호의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및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·공급되는 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제외한다): 10년 이내"로 하며,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 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"제1항제3호 및 제4호"를 각각 "제1항제3호, 제4호 및 제5호" 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한다. 이 조에서 같다)을"을 "한다)을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제1항제3호 및 제4호"를 "제1항제3호, 제4호 및 제5호"로 한다.

- 5.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건설·공급되는 주택: 30년 이내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78조의2(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)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.
  -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매 입하여야 한다.
  - ③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2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하는 자에게 매입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) 제64
조 및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제1항 또는
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4조(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)	제64조(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)
① 사업주체가 건설·공급하는	①
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	
정된 지위(입주자로 선정되어	
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	
리·자격·지위 등을 말한다. 이	
하 같다)로서 다음 각 호의 어	
느 <u>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</u>	<u>하나에서 정하는 기간</u>
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	
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	
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	
전매(매매·증여나 그 밖에 권리	
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	
를 포함하되, 상속의 경우는 제	
외한다. 이하 같다)하거나 이의	
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. 이 경	
우 전매제한기간은 <u>주택</u> 의 수	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</u>
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	정하는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을
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	적용하되, 주택
달리 정할 수 있다.	
1.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·공급	1
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	
<u>지위</u>	- <u>지위: 10년 이내</u>

- 2.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·공급 | 2. ------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. 다만, 제63조의2제1항제 2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설·공급되는 주택 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제외한다.
- 3.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3. -----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. 다만, 「수도권정비계획 위[다만, 「수도권정비계획 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 권(이하 이 조에서 "수도권" 이라 한다) 외의 지역 중 주 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투기과열 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에 따라 지정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 에서 건설·공급되는 분양가상 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제외 한다.

-지위(다만, 제63조의2제1항제 2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설·공급되는 주택 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제외한다): 10년 이내 <단서 삭제>

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 권(이하 이 조에서 "수도권"이 라 한다)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 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제63 조에 따라 지정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·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 자로 선정된 지위는 제외한 다]: 10년 이내 <단서 삭제>

4.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·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. 다만, 제57조제2항 각 호의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및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·공급되는 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제외한다.

#### <신 설>

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자 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

4
지위(다
만, 제57조제2항 각 호의 주택
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
정된 지위 및 수도권 외의 지
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
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
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
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
건설·공급되는 주택 및 그 주
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
제외한다): 10년 이내 <단서
삭제>
5.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건
설·공급되는 주택: 30년 이내
2
제1항제3호, 제4호 및 제
5호
제1항제3호,
. <u>제18제3로,</u> 제4호 및 제5호

받은 자가 전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(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 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 다)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 가 이루어진 경우, 사업주체가 이미 납부된 입주금에 대하여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(이하 "매입비용"이 라 한다. 이 조에서 같다)을 그 매수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해 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 득한 것으로 보며, 제2항 단서 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하는 경우의 매입비용에 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.

④ 사업주체가 <u>제1항제3호 및</u> <u>제4호</u>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 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

<u>.</u>
3
<u>한다)을</u>
④ <u>제1항제3호, 제4</u>
호 및 제5호

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.

⑤・⑥ (생략)

<신 설>

\_\_\_\_\_

⑤ • ⑥ (현행과 같음)

제78조의2(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)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 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.

-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항 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 당 주택을 매입하여야 한다.
- ③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2항 에 따라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하는 자에게 매 입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 급한 날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 다.